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9월호

발행일 | 2026년 9월 18일

In Focus

- + 재경부, '26년 세제개편안 발표...반도체 등 6대 품목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 [\(바로가기\)](#)
- + GHG 프로토콜 ISO,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기업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바로가기\)](#)
- + EU, 주요 AI 개발사에 보안 관리 체계 등 정보 제공 요구...인공지능법 집행 본격화 [\(바로가기\)](#)
- + 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formation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감원, FY24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9사 감사인 지정 등 총 76사 조치 발표...감사인인 위반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 여부 점검 필요	4
	▪ 기준원, K-IFRS 제1118호 정착 지원 TF 4차 회의 주요 내용 공개	6
	2. 자본시장	
	▪ 재경부, '26년 세제개편안 발표...반도체 등 6대 품목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	7
	▪ 금융위,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적용토록 제도 개선...12월 시행 예정	10
	3. ESG·지속가능성	
	▪ 환경부,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작성 지원 위한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 2종 공개	12
	4. 기술·디지털	
	▪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계속...AI 활용한 보안 테스트 점진적 확대	14

02	해외 업데이트	16
	1. ESG·지속가능성	
	▪ GHG 프로토콜·ISO,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17
	2. 기술·디지털	
	▪ EU, 주요 AI 개발사에 보안 관리 체계 등 정보 제공 요구...인공지능법 집행 본격화	18
	▪ 주요국, AI 관련 책임 논의 본격화...개발·운영·이용 주체 책임 범위 구체화 착수	20
03	주목할 간행물	21
	▪ 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formation	22

01

국내 업데이트

금감원, FY24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9사 감사인 지정 등 총 76사 조치 발표...감사인은 위반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 여부 점검 필요

9월 4일 금융감독원이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점검한 결과 및 유의사항을 발표함.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제출 대상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도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 방식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거래소(상장사) 또는 금감원(비상장사)을 통해 증권위에도 제출
제출 기한	별도(개별) 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 전까지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시 정기주총일 4주 전까지 ▲K-IFRS 미적용 시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까지 제출(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점검 결과 총 76건의 위반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회계연도	구분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조치 합계	조치 없음
		3년	2년	1년				
2024	상장	1	-	2	18	12	33	-
	비상장	-	1	5	11	26	43	-
	합계	1	1	7	29	38	76	-

2018 회계연도 이후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 회계연도에는 총 76건의 위반이 적발돼 최근 3개 회계연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조치 유형별로는 9사에 감사인 지정, 29사에 경고, 38사에 주의 조치가 부과됨. 재무제표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가,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부과되며, 최종 조치는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한편,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안내함.

회사 및 회사관계자 유의사항

-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인 필요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¹(대형 비상장회사)인 경우 제출 필수
 - '18년 외부감사법 개정²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 의무 적용
- 경영진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²하여 기한 내 제출하고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증선위에 사유 제출
 - 정기주총 시기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제출기한을 재산정해 기한 내 제출해야 함

감사인 유의사항

-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확인
 -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와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는지 등
-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제출한 재무제표의 사후 수정 ▲감사 전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이 있는 경우, 회사의 보고기간 말 재무보고절차에 내부통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징후일 수 있음

금감원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회사의 자체적인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정보 및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¹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²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기준원, K-IFRS 제1118호 정착 지원 TF 4차 회의 주요 내용 공개

8월 18일 한국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정착 지원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발표](#)함.

기준원은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이번 4차 회의는 7월 24일에 개최됐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6개의 목록은 다음과 같음.

안건	
1	주된 사업활동 판단 - 개별 자산 또는 자산 집단
2	정비사업조합 대여금의 손익 범주 분류
3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출자자로 참여시 관련 투자자산의 손익 범주 분류
4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생상품의 판단
5	파생상품 손익의 범주별 분류
6	매출채권 팩토링 거래 관련 손익 범주 분류

기준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안건별 쟁점과 이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도 함께 공개함.

재정부, '26년 세제개편안 발표...반도체 등 6대 품목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

In Focus

9월 1일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 8월 3일 개편안 초안 [발표](#) 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 4대 목표를 제시함. 목표별로 특히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36.12.31.)
 - 지원 분야: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 부품
 - 요건: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 X 기준공제액 (지방은 1.1~1.5배 우대)
-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 (개정) 반도체, 이차전지는 동일하나, '수소'는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
 - 미래형 에너지 기술(예: 소형모듈원전)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으로, 선정 시 일반 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연구개발 30~50%, 투자 15~30%)이 적용됨

생산적 금융 지원

- 생산적 금융 ISA 신설: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¹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이자 및 배당 전액 비과세 혜택 부여
- BDC 과세특례 신설: 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민생·지방 지원

지방 주도 성장 강화

-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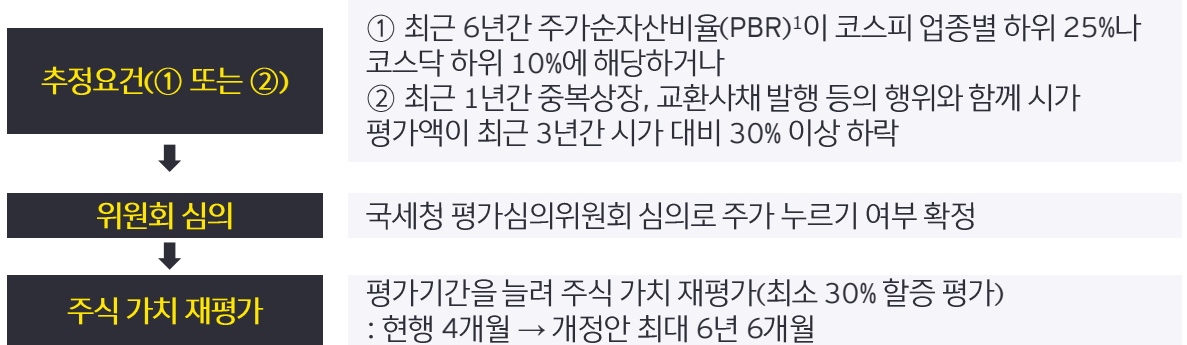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 '가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제3자 사업승계 관련 과세특례 신설
 - '가업' 정의 신설: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 727개를 선정했으며, 해당 업종 기업 중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 30년) 및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5년 → 10년) 요건 강화
 -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 ▲토지 공제 범위 축소 및 한도 신설 ▲공제한도 상향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x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1000억원) ▲주업종과 부업종 구분 후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등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세제 지원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주가 누르기' 방지

- 최대주주가 상장사 주가를 낮추어 상속·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위로 추정할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 부과



자사주 과세 체계 정비

- 자사주를 상법상 자본으로 보는 개정 상법을 반영해, 자사주 관련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현행			개정안
법인 과세	처분 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과세 대상 제외 (자본거래)
주주 과세	소각 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 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²	법인이 자사주 취득 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처분 목적 자사주 취득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Price-to-Book Ratio: 시장이 기업의 장부가치(순자산)에 대해 몇 배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PBR이 1미만인 경우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시가총액을 자본(순자산)으로 나누거나 주가를 주당장부가치[(총자산-총부채)/총발행된 보통주식의 수]로 나누어 구함

² 회사가 실제로 배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나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받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단, 현행 제도 및 개정안 모두 거래소에서 일반 장내거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함.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계속)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적격증빙(예: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없이 손금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건당 ▲경조금 20만원 → 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 → 5만원 이하로 조정

정부는 9월 3일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다만,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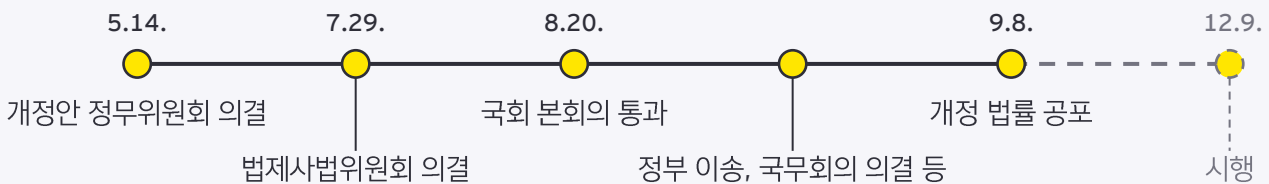
금융위,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 적용토록 제도 개선 ...12월 시행 예정

상장사가 합병 시 의도적으로 낮은 주가를 이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됨. (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정부·여당,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재계도 긍정 평가” 참고)

8월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함.

배경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상장회사가 계열회사와 합병을 하려는 경우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¹하고 있음. 이때 상장회사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 주로 의존하게 되어 있어, 합병비율(합병하는 회사 간 주식의 교환비율) 등 거래조건을 지배주주 등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더 나아가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현행	개정
1) 합병 등²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방법	
• 시장가격 기준으로 산정	• 시가, 자산가치³, 수익가치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 ➡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가치 산출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계약체결일 또는 이사회결의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1개월간, 1주일간,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10% 범위 내에서 할인 및 할증 허용)

²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

³ 순자산/발행주식총수

⁴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현금흐름모형(DCF) 또는 배당할인모형(DDM)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치

현행	개정
1) 합병 등의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계속)	
② 합병 등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 시 가격 산정방법	
주주-법인 간 협의 → 시가 →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주주-법인 간 협의 →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 → 법원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2) 절차적 장치 강화 통해 합병 등의 거래 시 공정성 제고	
① 이사회 의견서의 작성 및 공시 강화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	해당 의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②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공시 강화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시해야 함
③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공시 강화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에 대한 별도 공시 의무 없음	특수관계인¹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²를 추가 공시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고, 일반주주는 공시자료를 확인하여 합병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또한 주주 충실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권리 구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8일 공포됐으며, 12월 9일부터 시행됨.

¹ 가족·친인척, 지배회사, 계열회사, 임원, 사실상 지배자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²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출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임원겸직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

환경부,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작성 지원 위한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 2종 공개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과 투자자 요구에 따라 기업의 자연자본에 대한 공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이 자연자본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와 해설서가 마련됨. 8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¹ 실무 해설서' 2종을 공개했다고 [발표](#)함.

배경

- '26년 10월 중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존 공시기준인 IFRS S1 체계 내에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NFD)의 분석법을 활용해 자연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실무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 (본 뉴스레터 2026년 5월호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은 '실무서'로 개발 결정...올해 10월 초안 공개 예정" 참고)
 - IFRS S1상 기업이 모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이미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 지침으로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임.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대응 필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환경부는 그간 TNFD 권고안 번역본과 리프 접근법 번역본, 시범·가상보고서 등 10권의 자료를 발간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지원해왔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결과 중심으로 작성된 기존 자료와 공시 사례만으로는 실제 분석 및 작성 방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환경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체계의 이해부터 분석, 전략 수립, 보고서 작성까지의 과정을 실무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실무 해설서를 마련함.

자연자본공시 안내서

- 자연자본공시 관련 국내외 공시 동향 및 주요 체계, 공시 지표를 설명
- 예측(시나리오) 분석, 생물군계², 이해관계자 참여, 자연전환계획³ 수립 방법, 자연 관련 분석도구 활용법 등 자연자본공시를 위한 정보 제공

리프 실무 해설서

-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분석 절차인 리프 접근법을 국내 기업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프 각 단계별 해설, 점검표(체크리스트), 해외·업종별 적용 사례를 수록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자연자본공시의 표준 분석 절차로, ▲사업장이 자연과 접하는 지점을 찾고(Locate)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단하며(Evaluate) ▲이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평가한 뒤(Assess) ▲대응 전략을 세워 공시를 준비하는(Prepare) 네 단계

² 생물군계(Biome): 기후, 지형, 식생, 동식물 구성 등 유사한 생태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생태계의 집합체로, 툰드라 생물군계, 산호초 생물군계, 사바나 생물군계 등이 대표적인 예임

³ 기업이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자연자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 방식을 개편하는 구체적인 실천계획

이채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자연자본공시는 자연과 기업 경영이 서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연 관련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출발점”이라며 “국제 공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힘.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 계속...AI 활용한 보안 테스트 점진적 확대

엔트로픽사의 미토스 등 고성능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사이버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AI 공격을 AI로 방어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대규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프런티어(최첨단) AI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¹를 활용한 1차 보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3일에는 참여 자격을 완화해 2차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배경

- '13년 금융사 대규모 전산마비 사태 이후 전산자원 보호를 위해 업무용(인터넷 연결 불가한 내부망 PC)과 개인용(인터넷 PC)으로 네트워크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가 도입됨.
- 망분리 규제가 업무 비효율뿐 아니라 신기술 활용 저해로 이어져 규제 개선 요청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생성형 AI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금융경쟁력까지 저하하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 이에 '24년 8월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4년 9월호 "금융위,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금융사 생성형 AI 활용 허용" 참고)

금융위는 1차 테스트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프런티어 AI의 취약점 탐색기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또한 발견된 취약점이 즉시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향후 AI를 활용한 침해위협 본격화에 대비해 ▲외부에 노출되는 전산자산 등 공격표면 식별 및 관리 강화 ▲신속한 보안 패치 등 대응 속도 강화 ▲'AI는 AI로 방어하는' 대응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차에 이어 다음과 같이 신청 자격을 완화한 2차 테스트가 실시될 예정임.

구분	1차 테스트 (6월~ 진행 중)	2차 테스트 (10월~ 예정)
신청 기준	• 금융회사: ①총자산 10조원 이상이고 ②상시종업원 수 1000명 이상 •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는 제외됨	• 금융회사: ①총자산 2조원 이상이고 ②상시종업원 수 300명 이상 (단,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됨) • 전금업자: ①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 2조원 이상이고 ②전자금융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 초과 (단, CISO 요건 동일하게 적용)
대상 기관	49개사	75개사 (금융 59개사, 전금 16개사)
선정 기관	10개사 (6월 17일 선정)	15개사 이내 (10월 7일 선정 예정)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 소프트웨어를 직접 컴퓨터에 설치하고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SaaS 방식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이용 가능.

금융위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10월 7일 2차 테스트사를 선정해 망분리 규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1년 한시)를 발급할 예정임. 선정된 기업은 1차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마련한 후 프런티어 AI와 보안 SaaS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 및 개선할 수 있음.

금융위는 1차 및 2차 테스트 진행 경과를 바탕으로 3차 테스트 시기와 선정 규모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임. 또한 이와 같은 테스트를 상시 제도화하고 고도의 AI·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힘.



02

해외 업데이트

GHG 프로토콜·ISO,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 통합 계획...기업 보고 부담 줄이고 감축 노력 촉진 기대 In Focus

온실가스 프로토콜(GHGP)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업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들을 통합해 단일한 기준 체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함. 7월 29일 GHGP는 지난해 ISO와 구축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동 브랜드의 단일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통합 대상이 된 기준은 다음과 같음.

GHGP 기준

- **활용 현황:**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후 관련 공시 및 목표 설정 체계들이 온실가스와 관련해 GHGP 기준을 적용하거나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ISSB는 제3자 기준인 GHGP 기준이 개정될 경우, ISSB의 제·개정 정규절차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하여 기준서에 반영하도록 함
 - ISSB 기준에 기반해 마련된 우리나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GHGP 기준 또는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법(예: 탄소중립기본법상 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통합 대상 기준 및 지침:**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스코프 2 가이드스 ▲스코프 3 기준 ▲Actions and Market Instruments (AMI) (개발 중)
 - AMI 기준은 기업의 물리적 배출량과 시장 메커니즘(예: 재생에너지 인증서)이 각각 기후에 미친 영향을 분리해 보여주고자 함

ISO 기준

- **활용 현황:** ISO 14064 시리즈(1~3)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거량 측정·보고·검증 기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 **통합 대상 기준:** ISO 14064-1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 규칙 및 지침'

GHGP는 이날 공개한 기준 개발 [계획서](#)에서 통합 기준은 크게 '일반 요구사항 및 물리적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AMI'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종 구조 및 세부 구성은 개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힘. 2027년 2분기에 통합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2028년 4분기에 최종 기준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팀 모힌(Tim Mohin) GHGP CEO는 "통합 기준은 기업 보고를 단순화하고 중복을 줄이며, 시장과 국가·지역 간 공시 일관성을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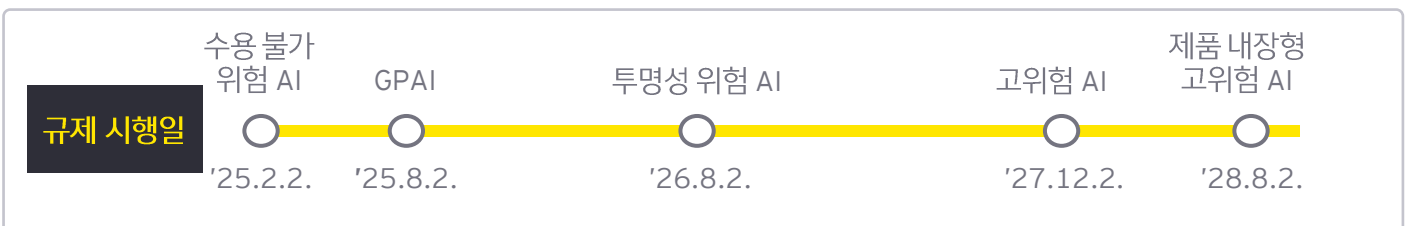
EU, 주요 AI 개발사에 보안 관리 체계 등 정보 제공 요구... 인공지능법 집행 본격화 In Focus

최근 AI 관련 사이버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8월 말 주요 AI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안전성, 저작권법 준수 현황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정보요청서(RFI)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 유럽의 정책 전문 매체가 집행위 고위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는 인공지능법 집행 권한을 최초로 행사한 것으로 RFI 미응답 또는 허위 답변 시 과징금을 포함한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배경

- '24년 8월 1일 발효된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고 차등적 규제를 적용함.
 - 수용 불가 위험: 전면 금지 (예: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민감한 특성을 기반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AI)
 - 고위험: 허용하되 엄격히 규제 (예: 도로교통 등 중요 인프라 관리 AI, 신용점수 평가 AI)
 - 제한적(투명성) 위험: 허용하되 투명성 의무¹ 등 일정 수준으로 규제 (예: 딥페이크 생성 AI, 챗봇)
 - 최소 위험: 허용하고 미규제 (대부분의 AI 시스템)
- 한편, 이 법은 생성형 AI 등 범용 AI(GPAI)² 모델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는데, ①모델의 기술적 특성 등을 설명한 문서와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②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③모델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를 요약해 공개할 의무가 있음.³

인공지능법상 수용 불가 위험 AI, GPAI 및 투명성 위험 AI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현재 모두 시행 중이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규정 적용 시점은 내년 12월 2일로 연기되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 "EU, '고위험 AI' 규제 '27년 말 이후로 연기 확정...투명성 의무는 원안대로 8월 시행" 참고)



<EU 인공지능법 시행 일정>

규제당국이 인공지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은 8월 2일자로 [부여](#)⁴되었으며, 이번 RFI는 조사 절차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음.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EU 기술주권 등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RFI 발송 사실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 AI라는 사실 또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콘텐츠는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표시할 의무

² 특정 목적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챗봇·검색·코딩·이미지 생성 등 여러 AI 시스템의 기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범용(General Purpose) 모델

³ GPAI가 고위험 AI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위험 AI로 간주됨.

⁴ 고위험 AI 및 제품 내장형 고위험 AI의 경우, 규정 시행 즉시 집행 권한이 부여됨.

RFI를 통해 요청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사이버보안 및 안전성 관련 정보

- 대상: 최첨단 AI 모델 개발사들
- 요청 정보: ▲AI 모델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이버보안 및 물리적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외부 기관에게 모델을 평가받을 때 부여하는 접근 권한 ▲외부 안전성 평가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 방식 ▲모델 공개 후 사용 현황 모니터링 방식 등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은 또한 집행위가 인공지능법상 모델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를 요약해 공개해야 함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저작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비공식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AI 개발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EU 저작권법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힘.

AI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집행위가 인공지능법 관련 감독을 위해 공식적으로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님. 기업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정보를 재요청하고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을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GPAI 모델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유로(약 235억원)와 글로벌 연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됨. 또한 집행위는 인공지능법에 따라 AI 모델 평가 수행, 시정조치 요구 등 보다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국, AI 관련 책임 논의 본격화...개발·운영·이용 주체 책임 범위 구체화 착수

최근 주요국 법원과 정책당국 등이 인공지능(AI)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할 것인지와 함께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유럽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논의와 원칙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AI 학습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책임 논의

- 9월 1일 미국 법무부는 뉴욕타임스 대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소송과 관련해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미국 정치·정책 전문 매체가 [보도](#)함.
 - 미 법무부는 AI 모델 학습에 대해 광범위한 저작권 책임을 물을 경우 AI 혁신과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가 MS와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허가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며 '23년 12월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과 저작권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영국: AI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귀속 원칙 정립 중

- 7월 7일 영국 법률전문가 기구인 영국관할권태스크포스(UK Jurisdiction Taskforce)¹는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의 책임(Liability for AI Harms)’이라는 [의견서](#)를 통해 “계약, 과실, 전문가 책임 등에 관한 기존 법리로 상당수 AI 관련 분쟁을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 AI는 법인격을 갖지 않으므로 스스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은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에게 배분될 수 있음.
 - 이때 AI 가치사슬 내 책임 배분의 주요 기준은 ‘계약’이며, 계약이 없는 경우 기존의 과실책임 법리²가 적용될 수 있음.

EU: 플랫폼 및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 구체화

- 최근 유럽에서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6월 16일 EU 사법재판소(CJEU)는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이른바 ‘중개자 면책(intermediary immunity)’의 적용 한계를 [제시](#)함.
 - 이에 따르면 플랫폼이 콘텐츠의 추천·노출·배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책임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처럼 주요국에서는 AI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부터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이르기까지 책임 주체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특히 향후 AI 관련 피해 발생 시에는 누가 해당 위험을 예견하고 통제·관리할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¹ 영국 법무부가 지원하는 기구로, AI·블록체인·스마트계약 등의 신기술에 대해 잉글랜드 및 웨일스 관할권의 기존 법체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견을 제시함. 이 기구가 발표하는 의견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법원이나 중재기구가 관련 분쟁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² 누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누가 예방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등

03

주목할 간행물



EY: From extractivism to regeneration - Unlocking the transformation

In Focus



경제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소수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에 따른 사회·환경적 비용은 사회 전반에 전가되고, 그 규모가 지구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추출주의(extractivism)' 관행이 기업의 사업 모형에서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EY가 추출주의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과 지구의 번영을 핵심 가치로 삼는 '재생 경제(regenerative economy)'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행함.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G7 국가에서 주주 배당금은 근로자 임금보다 3배, 법인세 납부액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으며,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후생¹ 손실과 생물다양성 손실 비용도 각각 45%,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추출주의를 고착시키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주주 이익을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단기적 재무성과에 집중하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구조 ▲소유주와 경영진의 자기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를 보상·강화하는 인센티브 체계 ▲수탁자로서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가능성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점 ▲기업의 사회·환경 관련 선언과 실제 행동의 간극 ▲복잡하고 파편화된 조세 제도 등을 제시함.

보고서는 재생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당국, 금융시장 및 시민사회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구상 중인 다양한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재생 경제가 확산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고 이에 비추어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이 현재의 사업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지금 던져야 할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이제는 기업들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단순히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 경제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¹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이란 소득·자산 등 경제적 자원과 이를 통한 소비로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생활 수준을 의미하며, 전체 소득이 같더라도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사회 전체의 후생은 낮아짐. 불평등으로 인해 손실된 경제적 후생이란 예를 들어 ▲소득이 더 고르게 분배됐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 ▲빈곤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사회적 갈등 대응에 쓰이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의미함.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김채원 직원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